

의안  
번호

365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
전문위원 김 동 성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65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### 2. 제안이유

- 202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,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 경감의 적용기한이 2022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 규정에 대하여 그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0조의3)
- 나.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경감의 적용기한이 2022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(안 제10조의2 삭제)
- 다.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9조 및 제10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4. 9. 19. ~ 2024. 10. 10. (21일간)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현행 감면대상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고, 서울경감의 적용기한이 만료된 대상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현행조례 감면대상의 적용시한이 2024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산 등 감면대상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,

**적용시한 만료 감면대상(8개)**

| 감면대상                      | 감면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면기간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|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국가유산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| 연장<br>(3년)<br>2027.12.31. |
|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|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최저 세율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| 철거되는 무허가 건축물 감면으로 철거민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|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| 한옥밀집지역 등록한옥의 보전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          |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         | 실효위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기능 유지와 기존 지방세 감면과의 조세형평 제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|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어 존치기간이 1년 초과시 의료기관의 재산세 면제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안 제10조의2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2항제4호가목<sup>1)</sup>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경감 적용기한이 2022년 5월 31일로 만료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금지 조치가 없어져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임.
- 그 밖의 안 제2조, 제4조, 제9조 및 제10조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임.

#### <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내용>

| 구 분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안 제2조  | 「문화재에 대한 감면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국가유산에 대한 감면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 |
| 안 제4조  |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|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」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 | 변경  |
| 안 제9조  |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,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      | 추가  |
| 안 제10조 |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  |

#### 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적용기한이 만료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,

##### 1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4.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을 금지되는 경우

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1항<sup>2)</sup>에 따라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---

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